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60호 2023. 6. 15.(목)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668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1669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670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1671호 공주시 응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1672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1673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674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1

제1675호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규 칙】

공주시의회 규칙 제654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55

공주시의회 규칙 제655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57

【공 고】

제2023-1416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고 시】

제2023-98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2

제2023-99호 유구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74

제2023-100호 신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92

제2023-102호 도로명주소 고시 95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8.)에서 의결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6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68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1호”를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2조”로 한다.

제2조(「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제4조(「공주시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창업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특산

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표법」 제9조”를 “「상표법」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2.“온누리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온누리 공간 또는 공주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을 정하고”를 “약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기 정착”을 “제도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한 경제적 사회적”을 “위한 사회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온누리공시민”을 “온누리공주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온누리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온누리시민제 조기정착, 온누리공주시민확보 등을”을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재 관람료 50퍼센트 할인

5. 시 주관 각종 축제·문화행사·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 (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 제도)추진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의 제목 “(마일리지 제공)”을 “(마일리지 제공·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계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행위”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
한 결제에”를 “온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
로 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제6조의4제1항 중 “정하여,”를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
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	가맹점 사용		20% 이내	일반 가맹점
			마일리지 범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화폐 전환의 적용례)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역화폐 시스템이 구현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탄천면	덕지리	1반	월양이
		2반	뒷골, 너망골, 책골
		3반	아래쇠줄
		4반	물흘리기, 종안이
		5반	아랫말
		6반	구터

별표 월송동 행정리.통명란 중 금홍9통 다음에 금홍1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송동	금홍10통	1반	장기로 21-29, 공주금홍LH행복1단지 101동 101호 ~ 708호
		2반	장기로 21-29, 공주금홍LH행복1단지 101동 801호 ~ 1408호
		3반	장기로 21-29, 공주금홍LH행복1단지 102동 101호 ~ 708호
		4반	장기로 21-29, 공주금홍LH행복1단지 102동 801호 ~ 1508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탄천면 법정리명 중 덕지리와 소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탄천면	덕지리	1	덕지리	월양이, 뒷골, 너망골, 책골, 아래쇠줄, 종안이, 물흘리기, 아랫말, 구터
소 계	17	24	24	

동등”을 “활동 등”으로, “향토문화”를 “지역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빛낸 자로서 특별공로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상”을 “웅진문화대상”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1. 지역개발 부문: 산업,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분야에서 도시발전에 기여한 자

2. 사회봉사 부문: 봉사 실천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3. 문화·예술 부문: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예술 진흥 및 시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자

4. 교육·체육 부문: 학교 또는 사회 교육에 공헌하거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5. 효행·선행 부문: 가정의 참된 의미 실천과 올바른 행동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자

6. 특별공로 부문: 신망과 인격을 겸비한 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거나 공주를 빛낸 자(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춘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제4조제2항 중 “25”를 “30”으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중”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있는자”를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사진(반명함판, 3×4센치) 또는 전자이미지 파일

제8조제1항 본문 중 “문화상”을 “웅진문화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상자가 고인일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웅진문화대상 업무 담당과장”으로, “행정업무”를 “웅진문화대상 업무”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상”을 “웅진문화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22년 12월31일”을 “2025년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을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8. 화학사고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점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1.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축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 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 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지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21조(화학안전 지킴이)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과 적절한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화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화학안전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2. 화학물질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화학사고 및 배출 위험 감시활동

3.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한다.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유전자분석실, 종합검정실,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2. “관내 농업인”이란 공주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및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의 운영·관리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④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① 연구관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연구관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관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벼(쌀) 품종검정은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사실과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시료를 찾아가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분석항목이 토양 화학성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와 퇴비·액비 성분 검사 결과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결과통보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의뢰한 시료만 할 수 있다.

제8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에 따라 결과통보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결과통보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하며, 징수 절차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② 관내 농업인이 토양 화학성, 토양 중금속, 토양선충, 가축분뇨 퇴비·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2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실은 분석의뢰 받은 시료의 시료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3조(분석자료의 기록 및 관리)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석실에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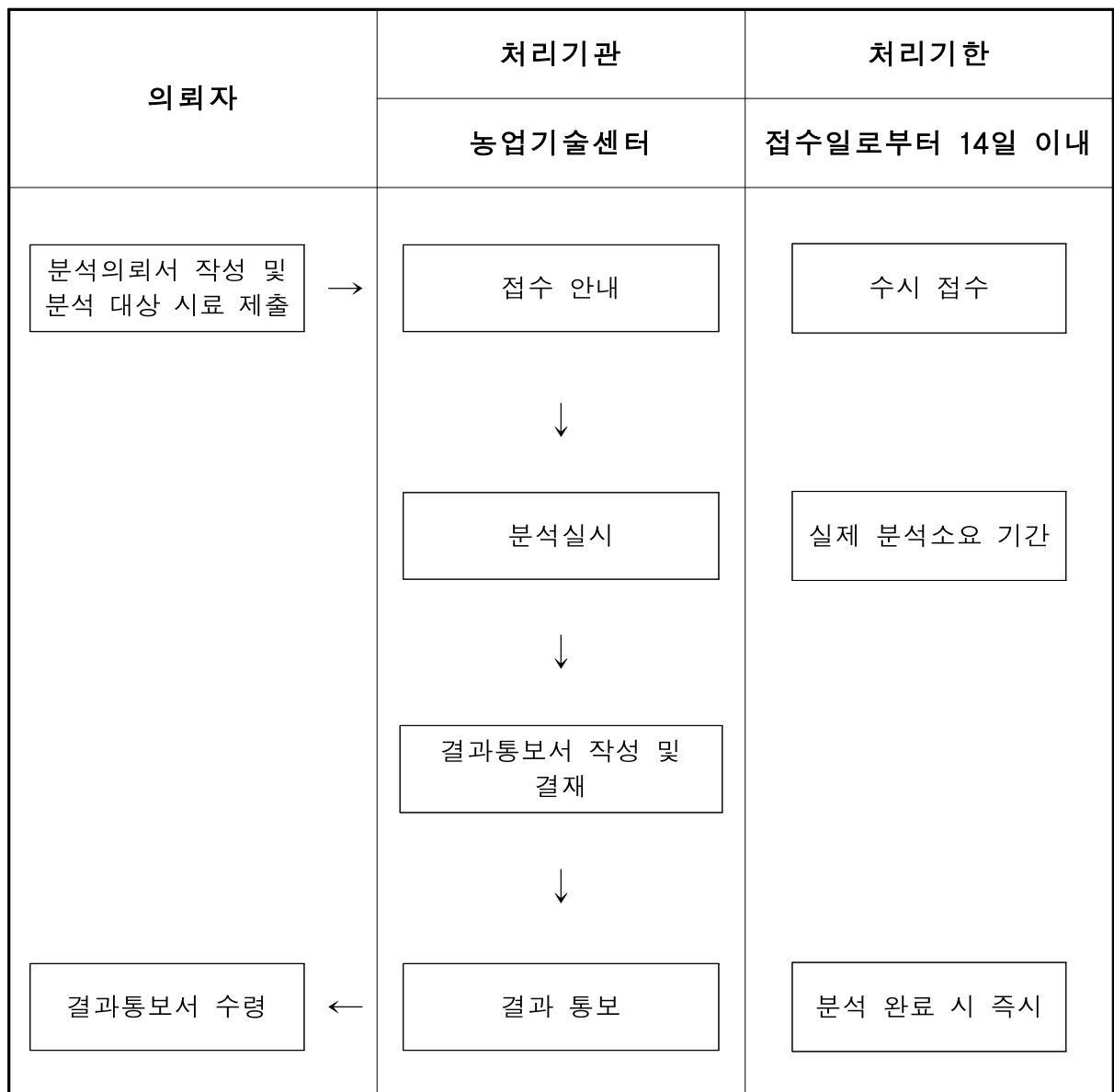
분석항목(제2조 관련)

분석항목	분석성분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성 산도(pH), 유기물(OM), 유효인산(Av. P₂O₅), 교환성 칼륨(Ex. K), 교환성 칼슘(Ex. Ca), 교환성 마그네슘(Ex. Mg), 유효규산(Av. SiO₂), 전기전도도(EC), 석회소요량(CaCO₃) ○ 중금속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비소(As), 수은(Hg) ○ 토양선충 토양 300g당 마리수
가축분 퇴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Cu), 아연(Zn)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Cu), 아연(Zn), 질소(N), 인산(P), 칼륨(K)
농업용수	산도(pH), 전기전도도(EC), 플루오린(F ⁻), 염소(Cl ⁻), 브롬(Br ⁻), 질산태 질소(NO ₃ -N), 인산염인(PO ₄ -P), 황산(SO ₄ ²⁻), 나트륨(Na ⁺), 암모늄태 질소(NH ₄ -N), 칼륨(K ⁺), 칼슘(Ca ²⁺), 마그네슘(Mg ²⁺), 중탄산(HCO ₃ ⁻)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
벼(쌀)	유전자분석에 따른 품종검정

[별표 2]

분석 의뢰 절차(제5조 관련)

1. 분석의뢰서 접수: 수시 접수
2. 분석실시: 의뢰서 접수 14일 이내 분석항목별 성분 검사 실시
3. 결과통보서 작성 및 결재
4. 분석 결과 통보: 분석완료 후 지체없이 통보



(뒷쪽)

토양 분석의뢰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경작자	작물	재배환경 (논, 밭, 시설, 과수)	농경지 주소	면적 (평, m ²)	성토 여부
1						
2						
3						
4						
5						
6						
7						
8						
9						
10						

(뒷쪽)

가축분뇨 분석의뢰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생산자	채취 (생산) 연월일	축사 소재지	사육 두수	축사면적 (평, m ²)	퇴비사 소재지	퇴비사 면적 (평, m ²)
1							
2							
3							
4							
5							
6							
7							
8							
9							
10							

(뒷쪽)

잔류농약 분석의뢰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작물	주소	생산자	재배 양식	용도	수거단계 (생산, 유통)	출하 예정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5호서식]

토양중금속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의뢰자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경작자	성 명		
	주 소		
시 료 명		용 도	농사용 적합여부
분석항목		시험 개요	
분석결과	분석성분	검사결과	비 고
<p>○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시료의 분석결과는 전체 토양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의뢰된 일부 토양의 결과로써, 통보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p>			
공 주 시 장			
발급일자: 20 . . .	담당자:	전화:	

[별지 제6호서식]

농업용수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의뢰자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경작자	성 명		
	주 소		
시 료 명		용 도	농사용 적합여부
분석항목		시험 개요	
분석결과	분석성분	검사결과	비 고
<p>○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시료의 분석결과는 전체 농업용수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의뢰된 일부 농업용수의 결과로써, 통보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p>			
공 주 시 장			
발급일자: 20 . . .		담당자:	전화:

[별지 제7호서식]

잔류농약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의뢰자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경작자	성 명			
	주 소			
시 료 명		용도/재배양식		
분석항목		시험 개요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	허용기준	비 고
<p>○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서, 통보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p>				
공 주 시 장				
발급일자: 20 . . .		담당자:		전화:

[별지 제8호서식]

벼(쌀) 품종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의뢰자	기관명	성명/연락처	
	주소		
생산자	성명		
	주소		
의뢰품종		최종 판정품종	
검정일		비고	

품종검정결과

샘플	판정품종	샘플	판정품종
No. 1		No. 13	
No. 2		No. 14	
No. 3		No. 15	
No. 4		No. 16	
No. 5		No. 17	
No. 6		No. 18	
No. 7		No. 19	
No. 8		No. 20	
No. 9		No. 21	
No. 10		No. 22	
No. 11		No. 23	
No. 12		No. 24	

○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분석결과는 일부 의뢰된 시료에 대한 결과로써, 통보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공 주 시 장

발급일자: 20 . . .

담당자:

전화: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06.08.)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윤 구 병

2023년 6월 15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654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위원장은 위원회가”를 “위원회는”으로, “출석하여”를 “출석시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개회일”을 “위원장은 개회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 위원장은”으로, “결정하여”를 “결정해”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요구하여”를 “요구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척과 회피)”를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 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06.08.)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윤 구 병

2023년 6월 15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655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을 “때, 회의장 안에 없
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나, 투표”를 “다만, 종이투표”로, “때
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투입한다”를 “넣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지 않는다”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9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성 명			사진 (3X4cm)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선거구명	
후보자 등록직위		소속정당명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후보자 사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선거구명	사진 (3X4cm)
후보자 등록직위	소속정당명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주시 공고 제 2023 - 1416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특수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제7조의2 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경우 특수용봉투(PP마대)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수용봉투(PP마대)의 제작 및 판매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폐기물 배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특수규격봉투”라 규정

(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8항 수정)

-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용도 및 재질 등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같은 조에 제5항 신설)
-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사양 규정(별표5 수정)
-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규정(별표7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5.[목] ~ 2023. 7. 6.[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 화 : 041-840-8682 / FAX : 041-840-243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 건

입법예고(안)	의 건(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1-840-8682]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438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7조의2제8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작한다”를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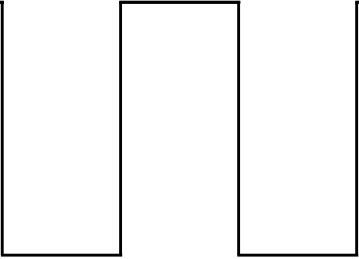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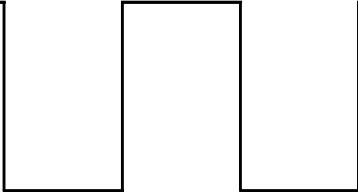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서(제9조제1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재 사용 봉투 (20 ℓ) 상품을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시마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p> <p style="text-align: center;">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시마크)</p> <p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봉투 (20 ℓ)</p> <p style="text-align: center;">-일 반 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만 배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 주 시 장</p> <p>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p> <p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용, 불연성(매립용),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p>
--	--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제1항 관련)

종 류		용 량	판 매 가 격
일반규격봉투	일반용 봉투	5리터	90원
		10리터	170원
		20리터	320원
		30리터	480원
		50리터	790원
		75리터	1,170원
	재사용 봉투	10리터	170원
		20리터	320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20리터	1,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6. ~ 8. (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⑤ (생략)</p> <p>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u>특수용 봉투(PP마대)</u>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제25</u> <u>조</u> ----- -----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특수규격봉투</u>----- -----.</p> <p>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p>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용 봉투로 배출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면·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재사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⑧ -----
----- 특수규격봉투-----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옥룡동 24-2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도 (1/5,000) : 게재생략
3.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도 (1/1,200) : 게재생략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1	20	보조 간선 도로	1,166	6호광장	소로2-170	일반 도로	국도 23호선	85.12.28	-
변경	중로	1	21	20~29	보조 간선 도로	1,165	6호광장	소로2-170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21	중로 1-21	◦ 도로 선형, 폭원, 연장 변경 - 폭원 : 20m → 20~29m - 연장 : 1,166m → 1,165m 감) 1m	◦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부 선형, 폭원, 연장 변경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광장	교통 광장	옥룡동 24-22번지 일원	7,556	증)371	7,927	85.12.28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7,556㎡ → 7,927㎡ 증) 371㎡	◦ 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유구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주시 고시 제2022-217호(2022. 12. 28.)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유구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I.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유구농공단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277,737.0m²
(변경) 277,737.3m² (증 0.3m²)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공주시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웅진식품 주식회사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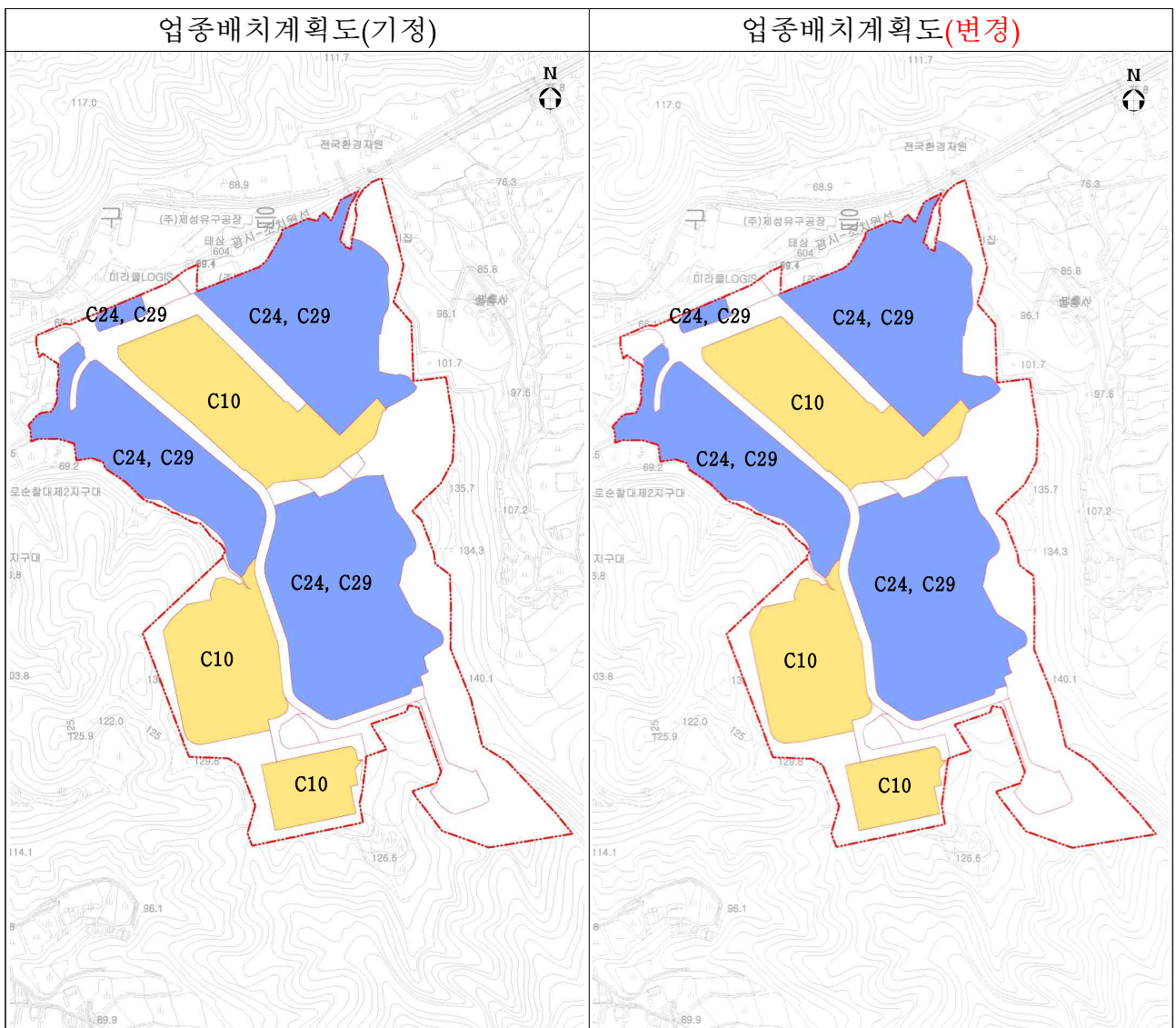
- 2021년 ~ 2023년 12월 31일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C10),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6.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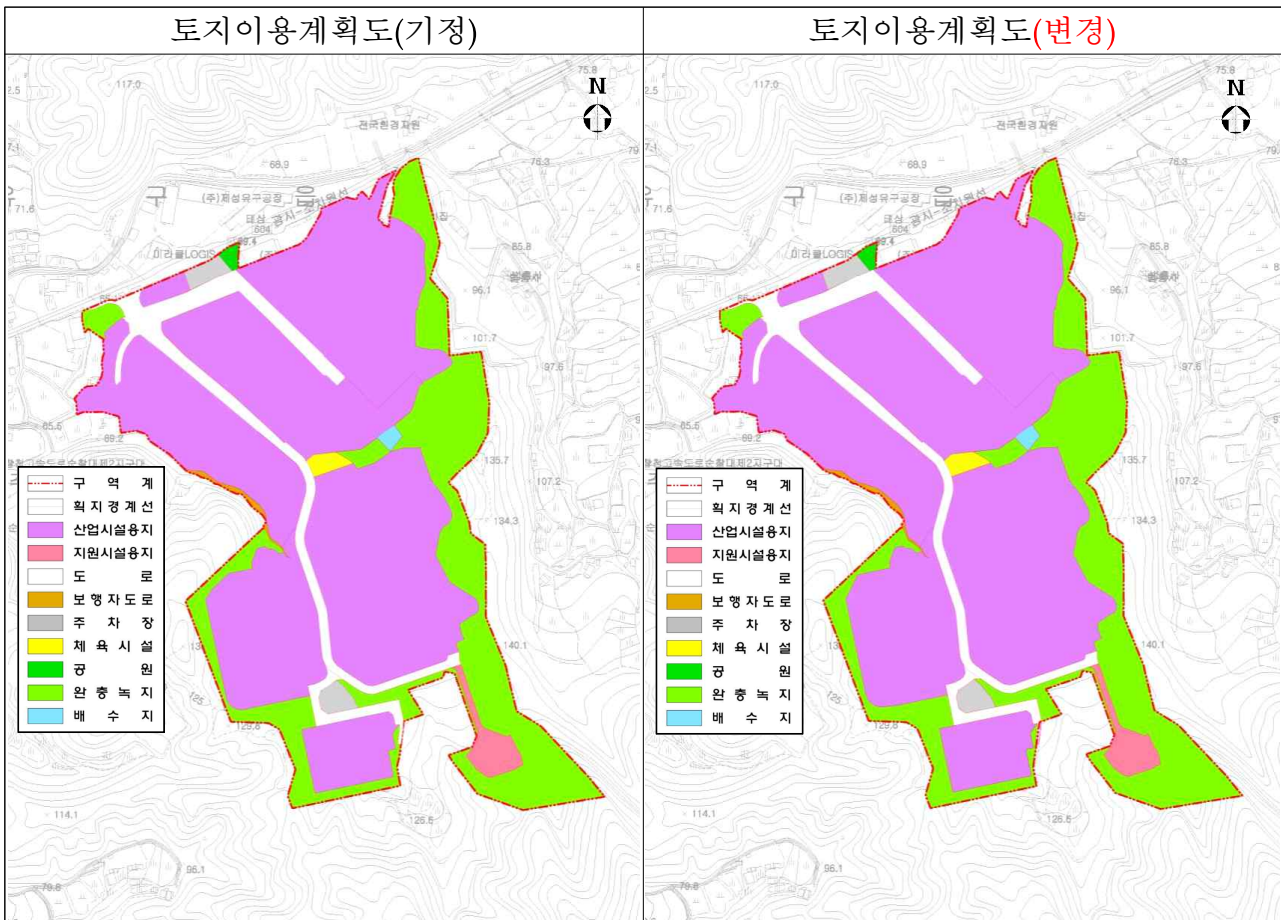
코드	업종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84,619.8	감) 473.4	184,146.4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64,996.7	감) 473.4	64,523.3	35.0	
C24 C29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9,623.1	-	119,623.1	65.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77,737.0	증) 0.3	277,737.3	100.0	
산업시설용지	184,619.8	감) 473.4	184,146.4	66.5	
지원시설용지	3,867.4	-	3,867.4	1.4	
공공시설용지	89,249.8	증) 473.7	89,723.5	32.1	
도로	20,715.5	감) 75.6	20,639.9	7.5	
보행자도로	820.5	-	820.5	0.3	
주차장	2,817.3	-	2,817.3	1.0	
배수지	587.9	-	587.9	0.2	
체육시설	1,149.0	-	1,149.0	0.4	
공원	597.4	-	597.4	0.2	
녹지	62,562.2	증) 549.3	63,111.5	22.5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1,404	20,715.5	1	208	2,530.6	3	1,167	18,069.2	1	29	115.7
	변경	5	1,404	20,639.9	1	208	2,530.6	3	1,167	18,069.2	1	29	40.1
중로	기정	2	1,090	17,408.2	-	-	-	2	1,090	17,408.2	-	-	-
	변경	2	1,090	17,408.2	-	-	-	2	1,090	17,408.2	-	-	-
소로	기정	3	314	3,307.3	1	208	2,530.6	1	77	661.0	1	29	115.7
	변경	3	314	3,231.7	1	208	2,530.6	1	77	661.0	1	29	40.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24	국지 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 664-3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중로	2	2	12-20	국지 도로	730	중로2-1	유구리 702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77	중로2-1	유구리 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소로	1	유구1	10.5-12	국지 도로	208	중로2-2	소로3-유구2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22.4.1.	
변경	소로	3	유구2	4	국지 도로	29	소로1-유구1	완충녹지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22.4.1.	면적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817.3	-	2,817.3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유구읍 유구리 696번지 일원	1,379.9	-	1,379.9	2009.3.13.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유구읍 유구리 347-1번지 일원	1,437.4	-	1,437.4	2022.4.1.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웅진공원	소공원	유구읍 유구리 664-2번지	597.4	-	597.4	2010.5.10.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유구읍 유구리 699번지 일원	62,562.2	증) 549.3	63,111.5		

※ 녹지는 비도시계획시설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체육시설	운동시설	유구읍 유구리 701번지	1,149.0	-	1,149.0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배수지	배수시설	유구읍 유구리 661번지	587.9	-	587.9		

5)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m ³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189.64	감) 5.24	2,184.40	
생활용수	493.64	감) 0.24	493.40	
공업용수	1,696.00	감) 5.00	1,691.00	

나)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오·폐수발생량(m ³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458.89	감) 4.21	1,454.68	
생활오수	434.49	감) 0.21	434.28	
공업폐수	1,024.40	감) 4.00	1,020.40	

다) 폐기물처리계획

구분	처리방법	비고
재활용 폐기물	- 분리수거 후 재생처리업자에 매각 처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 각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분	전력수요량(MWh)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6,461.3	감) 220.7	26,240.6	
산업시설용지	26,291.5	감) 220.7	26,070.8	
지원시설용지	169.8	-	169.8	

마) 통신공급계획

구분	통신수요량(회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통신공급계획	347	-	347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	277,737.0	277,737.3						
1	유구리	347	347	전	전	1,628.0	1,628.0	1,628.0	웅진식품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2	유구리	347-1	347-1	전	전	2,422.0	2,422.0	2,422.0	웅진식품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3	유구리	349-4	349-4	구	구	195.0	195.0	195.0	웅진식품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4	유구리	630	630-9	구	구	62,033.0	925.7	9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유구리	656	656	구	임	112.0	112.0	112.0	국 (기획재정부)					
6	유구리	658	658	장	장	40,184.8	40,184.8	40,184.8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7	유구리	660	660	장	장	11,983.8	11,983.8	11,983.8	웅진식품주식회사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의정부지점)		근저당권
8	유구리	660-1	660-1	도	도	133.2	133.2	133.2	공주시					
9	유구리	661	661	수	수	587.9	587.9	587.9	공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	유구리	662	662	장	장	18,870.3	18,870.3	18,870.3	웅진식품주식회사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의정부지점)	근저당권
11	유구리	662-1	662-1	도	도	1,197.6	1,197.6	1,197.6	공주시				
12	유구리	663	663	도	도	3,296.4	3,296.4	3,296.4	공주시				
13	유구리	664-1	664-1	차	차	669.8	669.8	669.8	공주시				
14	유구리	664-2	664-2	공	공	597.4	597.4	597.4	공주시				
15	유구리	664-3	664-3	도	도	3,481.2	3,481.2	3,481.2	공주시				
16	유구리	688	688	장	장	23,180.0	23,180.0	23,180.0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17	유구리	688-1	688-1	도	도	1,297.9	1,297.9	1,297.9	공주시				
18	유구리	688-4	688-4	도	도	21.5	21.5	21.5	공주시				
19	유구리	689	689	도	도	3,042.8	3,042.8	3,042.8	공주시				
20	유구리	692	692	임	임	16,043.3	16,043.3	16,043.3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1	유구리	693	693	공	공	1,546.2	1,546.2	1,546.2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2	유구리	694	694	도	도	820.8	820.8	820.8	공주시				
23	유구리	695	695	장	장	1,591.3	1,591.3	1,591.3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4	유구리	696	696	차	차	710.1	710.1	710.1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5	유구리	698	698	도	도	820.5	820.5	820.5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6	유구리	699	699	임	임	29,913.3	29,913.3	29,913.3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7	유구리	700	700	장	장	47,514.2	47,514.2	47,514.2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8	유구리	701	701	체	체	1,149.0	1,149.0	1,149.0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29	유구리	702	702	도	도	4,777.8	4,777.8	4,777.8	공주시				
30	유구리	703	703	공	공	3,041.2	3,041.2	3,041.2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1	유구리	704	704	장	장	7,152.8	7,152.8	7,152.8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32	유구리	706	706	도	도	129.0	129.0	129.0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33	유구리	707	707	도	도	339.8	339.8	339.8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34	유구리	708	708	대	대	3,867.4	3,867.4	3,867.4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35	유구리	산52	산52-2	임	임	44,493.0	44,493.0	44,493.0	웅진식품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I.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유구농공단지(확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웅진식품 주식회사 대표 이지호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공주시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277,737.0㎡
(변경) 277,737.3㎡ (증 0.3㎡)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1년 ~ 2023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77,737.0	-	277,737.3	100.0	
계획관리지역	277,718.3	증) 19.0	277,737.3	100.0	
보전관리지역	19.0	감) 19.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유구읍 유구리 산52-2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0	150%	• 지적분할 결과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단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277,737.0	1989.1.26.	
변경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단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277,737.3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구농공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면적 변경 - 면적 : 277,737.0m ² → 277,737.3m ² (증 0.3m ²)	• 지적분할 결과반영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5	1,404	20,715.5	1	208	2,530.6	3	1,167	18,069.2	1	29	115.7
	변경	5	1,404	20,639.9	1	208	2,530.6	3	1,167	18,069.2	1	29	40.1
중로	기정	2	1,090	17,408.2	-	-	-	2	1,090	17,408.2	-	-	-
	변경	2	1,090	17,408.2	-	-	-	2	1,090	17,408.2	-	-	-
소로	기정	3	314	3,307.3	1	208	2,530.6	1	77	661.0	1	29	115.7
	변경	3	314	3,231.7	1	208	2,530.6	1	77	661.0	1	29	40.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24	국지 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 664-3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중로	2	2	12-20	국지 도로	730	중로2-1	유구리 702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77	중로2-1	유구리 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09.3.13.	
기정	소로	1	유구1	10.5-12	국지 도로	208	중로2-2	소로3-유구2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22.4.1.	
변경	소로	3	유구2	4	국지 도로	29	소로1-유구1	완충녹지	진입 도로	농공단지	2022.4.1.	면적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유구2	소로3-유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면적 변경 - 면적 : 115.7m² → 40.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분할 결과반영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817.3	-	2,817.3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유구읍 유구리 696번지 일원	1,379.9	-	1,379.9	2009.3.13.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유구읍 유구리 347-1번지 일원	1,437.4	-	1,437.4	2022.4.1.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웅진공원	소공원	유구읍 유구리 664-2번지	597.4	-	597.4	2010.5.10.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체육시설	운동시설	유구읍 유구리 701번지	1,149.0	-	1,149.0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배수지	배수시설	유구읍 유구리 661번지	587.9	-	587.9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02-02-01	유구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277,737.0	증) 0.3	277,737.3	1989.1.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구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면적 : 277,737.0m² → 277,737.3m² (증 0.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 결과반영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의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3,638.8	감) 473.4	193,165.4		193,638.8	감) 473.4	193,165.4	
-	1	124,157.4	-	124,157.4	1-1	40,184.8	-	40,184.8	
					1-2	30,854.1	-	30,854.1	
					1-3	47,514.2	-	47,514.2	
					1-4	3,867.4	-	3,867.4	
					1-5	587.9	-	587.9	
					1-6	1,149.0	-	1,149.0	
-	2	30,332.8	-	30,332.8	2-1	30,332.8	-	30,332.8	
-	3	3,568.6	-	3,568.6	3-1	1,591.3	-	1,591.3	
					3-2	1,379.9	-	1,379.9	
					3-3	597.4	-	597.4	
-	4	35,580.0	감) 473.4	35,106.6	4-1	24,559.4	감) 473.4	24,086.0	
					4-2	9,583.2	-	9,583.2	
					4-3	1,437.4	-	1,437.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1 1-3 2-1 3-1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25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2	유구읍 유구리 66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25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1 4-2	유구읍 유구리 산52-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011(도축업)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25m) 이하	

나) 지원시설용지

○ 기숙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4	유구읍 유구리 708번지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기숙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다) 공공시설용지

○ 공원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3-3	유구읍 유구리 664-2번지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관련규정에 의함
		용적률		관련규정에 의함
		높 이		관련규정에 의함

○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3-2	유구읍 유구리 696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3	유구읍 유구리 347-1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2층(12m) 이하

○ 배수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5	유구읍 유구리 661번지	용도	허용용도	배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체육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6	유구읍 유구리 701번지	용도	허용용도	운동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관련규정에 의함
		용적률		관련규정에 의함
		높이		관련규정에 의함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산52-2번지, 347-1번지 일원(유구농공단지구역 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 명칭 : 유구농공단지(확장) 조성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면적 또는 규모	비고
도로	소로1-유구1호	- 폭원 : 10.5~12m, 연장 : 208m	
도로	소로3-유구2호	- 폭원 : 4m, 연장 : 29m	
주차장	주차장 제2호	- 면적 : 1,437.4m ²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웅진식품 주식회사 대표 이지호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4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1년 ~ 202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소로1-유구1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	2,530.6					
1	유구리	347	전	1,628.0	3.0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2	유구리	347-1	전	2,422.0	767.6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3	유구리	349-4	구	195.0	41.0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4	유구리	656	임	112.0	38.2	국 (기획재정부)				
5	유구리	703	공	3,041.2	99.3	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6	유구리	산52-2	임	44,493.0	1,581.5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2) 소로3-유구2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	40.1					
1	유구리	산52-2	임	44,493.0	40.1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3) 주차장 제2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	1,437.4					
1	유구리	347-1	전	2,422.0	1,287.9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2	유구리	349-4	구	195.0	4.9	웅진식품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36-24	공주시		근저당권
3	유구리	산52-2	임	44,493.0	144.6	공주시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비고
도로	소로1-유구1호	- 폭원 : 10.5~12m, 연장 : 208m	무상귀속
도로	소로3-유구2호	- 폭원 : 4m, 연장 : 29m	무상귀속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기정)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변경)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 업 비 : 3,990백만원(국비 2,793, 시비 1,197)

4.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신봉면 산정리 일원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새바람문화복지센터 신축, 새바람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신봉면 생활환경정비(배드민턴장 신축)
- 지역역량강화 : 문화프로그램·어르신건강교실·신봉봉사단 운영, 주민교육 및 훈련 등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6. 사업기간 : 2020 ~ 2025년(6개년)

7.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중심지 기능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8. 열람기간 : (기정) 2023. 5. 26. ~ 2023. 6. 09.(15일간)
(변경) 2023. 6. 12. ~ 2023. 6. 26.(15일간)

9.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별)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지역·지구
1	기초생활기반 확충 (새바람문화복 지센터, 새바람 노인문화센터)	산정리 150-1	과	2,117	2,117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산정리 169	대	3,013	383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산정리 311-2	대	1,000	630.08	신봉면 노인회	생산관리지역
2	지역경관개선 (배드민턴장 신축)	산정리 312-9	잡	662	354.04	신봉면 노인회	생산관리지역
합계				6,792	3,484.12		

10.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8248)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폐지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5.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평촌동촌길 40-15 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29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6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6.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343-1, 343-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평촌동촌길 40-15	2023 0615	신규	2010 0112	평촌~동촌을 넘어가는 길이라 평촌동촌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21-1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길 36-24 (송선동)	2023 0615	신규	2010 0112	도로의 방향이 동현리를 향하여 동현길로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3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319	2023 0615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536-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밤고개길 71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입동리 16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용봉입동로 883-32	2023 0615	신규	2010 0112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반영	
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22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뒤암마루길 74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57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직골길 54-8	2023 0504	신규	2010 0112	뒷동산 형국이 사지형이라고 한다 하여 사직골길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현리 14-4, 14-2, 14-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샘말길 50-22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16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60-3	2023 0615	신규	2010 0112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송정이라 부른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1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14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길 194-27	2023 0615	신규	2010 0112	상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상룡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319-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광터길 39-21	2023 0615	신규	2010 0112	이마을에 특히 부자들이 많이 살아 큰광이 여러 개 있었다 하여 대광터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산39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구 절골길 31-31 (석장리동)	2023 0615	신규	2010 0112	큰 절이 있었던 골짜기라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0-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253	2023 0615	신규	2010 0112	조선시대 초 이마을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904-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골길 87-21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말구리길 8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말구리길 83	2023 0615	신규	2011 0506	마을 지형이 말의 아귀리와 같다하여 말구리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38-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412-9	2023 0615	신규	2009 0825	금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고유명칭 활용	
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66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약로 265-22	2023 0615	신규	2010 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약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약이라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77-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길 104-35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10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길 239-29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50-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활원길 12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6-11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0 (상왕동)	2023 0615	신규	2010 0112	왕촌이라 불리던 하천을 타고 가는 길이라 왕촌길이라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349-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산길 38-49	2023 0615	신규	2010 0112	산의 모양이 마치 용과 같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15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질마고개길 26-7	2023 0615	신규	2010 0112	질마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고개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정했다하여 질마고개길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204, 204-7	충청남도 공주시 창벽로 120 (소학동)	2023 0615	신규	2010 0112	자연마을 명칭 반영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14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남학골길 53	2023 06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54-2, 55-5, 56-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질마고개길 1-12	2023 0615	신규	2010 0112	질마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고개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정했다하여 질마고개길로 부여	
2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5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172	2023 0615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28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67-2	충청남도 공주시 장골길 16 (금흥동)	2023 0615	신규	2010 0112	골이 길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20, 82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55-10	2023 0615	신규	2013 1023	탄천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240-1, 240-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240-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말구리길 8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말구리길 83	2023.06.07	건물번호 합병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86-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8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단길 16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단길 165	2023.06.07	지번확정에 의한 관련지번 청정	
3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산4-7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752 이인면 만수리 577	충청남도 공주시 남공주산단길 210	충청남도 공주시 남공주산단길 210	2023.06.07	지번확정에 의한 관련지번 청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산1-2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8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단길 19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단길 190	2023.06.07	지번확정에 의한 관련지번 청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0-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0-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25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251	2023.06.07	건축물대장에 의한 관련지번 청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21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214-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골뜸길 29-1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골뜸길 29-12	2023.06.07	지번분할에 의한 관련지번 청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 지 고 시 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51, 5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170-1	2023. 06.01	재건축에 의한 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50-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활원길 12-2	2023. 06.05	재건축에 의한 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16-7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길 68	2023. 06.05	재건축에 의한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576	충청남도 공주시 사직골길 54-8	2023. 06.09	재건축에 의한 말소